

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2017. 10. 31.

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

1. 제안경위

가. 제안자: 성동구청장

나. 제출일자: 2017. 10. 19.

다. 회부일자: 2017. 10. 20.(의안번호: 1157)

2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별표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5조,
제6조, 제8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7. 7. 6. ~ 2017. 7. 26.)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,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
- 3) 부패영향평가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, 특기할 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.

- 다만, 상위법인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이 2015년 1월 28일 자로 전부개정되고 2015년 7월 29일 자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적기에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임.